

의안번호	2201658
의 퇴 인	김정호의원
회 답 일	2024.8.5.
추계번호	24B19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제5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과 그 외의 건축물(이하 “민간건축물”이라 한다)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함. 다만, 민간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5항)	의무규정
	안 제49조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제2항 ¹⁾ 및 제5항 ²⁾ 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1	안 제49조제5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미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침수 방지지설 설치의 의무

1)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과 그 외의 건축물(이하 “민간건축물”이라 한다)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민간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화되어 있어 ³⁾ , 개정안의 내용은 민간소유의 건축물에 해당됨
	안 제49조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속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보수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지원 방법과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현재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에 속한 건축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음⁴⁾

3) 「건축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차수관 등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12.4.30. 관련 규정 신설」)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에 해당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해당하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침수 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규정

4)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표 1] 시도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합계	정비 완료	정비 대상							
			소계	침수 위험	붕괴 위험	유실 위험	취약 방재	고립 위험	해일 위험	상습 가뭄
계	2,756	1,897	859	656	38	49	30	26	40	20
서울	16	14	2	2	—	—	—	—	—	—
부산	68	47	21	18	—	—	—	—	3	—
대구	49	38	11	11	—	—	—	—	—	—
인천	16	16	—	—	—	—	—	—	—	—
광주	42	30	12	7	—	—	5	—	—	—
대전	4	—	4	4	—	—	—	—	—	—
울산	32	23	9	9	—	—	—	—	—	—
세종	17	11	6	6	—	—	—	—	—	—
경기	106	72	34	31	2	—	1	—	—	—
강원	345	264	81	40	5	11	8	13	3	1
충북	239	168	71	53	1	5	1	4	—	7
충남	194	112	82	73	1	1	—	2	4	1
전북	351	266	85	72	8	—	1	3	—	1
전남	380	236	144	107	12	11	—	—	12	2
경북	432	279	153	108	6	18	12	2	3	4
경남	362	236	126	101	2	2	2	2	13	4
제주	103	85	18	14	1	1	—	—	2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⁵⁾⁶⁾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1호~제3호 생략)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군사시설을 말한다. (제1호~제3호 생략)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표 2] 시도별 방재지구 지정 현황

(단위: m²)

도시명	방재지구					
	소계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11	2,643,759	5	2,286,895	6	356,864
경기도(고양시)	3	96,780	—	—	3	96,780
전라남도(목포시)	4	2,283,532	4	2,283,532	—	—
전라남도(순천시)	1	3,363	1	3,363	—	—
전라남도(신안군)	1	198,299	—	—	1	198,299
경상북도(울진군)	2	61,785	—	—	2	61,785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 도시계획 현황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